

공정거래제도 시행 20주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4월 10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갑영 연세대 교수를 초청하여 「공정거래제도 시행 20주년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간담회에서 김병일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제도 시행 20주년의 성과로 첫째,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의 도입·확산, 둘째, 규제개혁 등 경쟁주창자기능과 독과점 개선시책 등을 통한 시장구조의 경쟁화, 셋째,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심화의 상당한 치유, 넷째,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제재에 따른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다섯째, 성장시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시행 등을 들었다. 특히 경제환경이 세계화·지식경제화로 급변하면서 산업경제시대와는 경쟁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경쟁법의 기본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시장경쟁원리가 전방위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정거래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상반기에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사전 및 사후신고로 나누어져 있는 기업결합신고제도를 미국·EU 등의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거래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을 금년 상반기중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및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갑영 교수는 그동안 공정거래제도는 구조보다는 행태 위주의 폐해규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였고 원인보다는 결과 지향적인 법 운용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불공정 행태의 지속적 규제로 부당광고나 부당고객유인, 하도급거래 및 내부거래의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세계적 기준과 비교시 국내 대기업은 규모나 매출액이 결코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별다른 규제 실익



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여건이 경쟁적이지 못하면 내부거래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부당성 판단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인 전문화가 다각화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외부여건이 경쟁적이지 못하면 다각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글로벌화되고 IT산업위주의 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도 투명성·공정성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찬회에 참석한 회원사들은 건의사항으로 1999년 하도급 서면직권조사시 서류미비 등의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받았다면서 동일사안에 대해 2000년 서면직권조사시에는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서류미비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00% 소유관계가 있는 기업간 부당내부거래는 경쟁법보다는 증권거래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2001년도 1/4분기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실시

본 협회는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교육이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2001년도 1/4분기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06개 건설 및 제조업체의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 121명이 참석한 동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이삼봉 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2001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정책의 방향과 하도급법·시행령, 관련고시 및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법 위반 점수 누계에서 1점 감점의 혜택이 부여된다. 동 교육에서 이삼봉 하도급기획과장은 올해 하도급정책방향은 크게 네가지라고 밝혔다. 먼저 하도급거래 속성상 거래중단, 보복을 우려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99년부터 실시한 대규모 서면직권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2만 5천개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금성 결제방식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금융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업계에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99년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더욱 확대·보완하여 공공공사 등 일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까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구조, 입찰, 하도급, 설계, 감리, 보증 등 건

설 전분야에 있어서의 진입·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규제를 발굴하는 건설분야의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의 및 응답

질문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면 위법한 것으로 아는데, 부당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도급법 제4조제1항)했는지의 여부는 통상 대가와의 과정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그러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계약액의 일정비율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이라는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저가하도급심사지침상 발주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음.

질문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에 갈음하여 토지로 받고,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토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필지가 정확히 나눠지지 않아 부족부분은 6개월 만기의 어음을 지급하였다. 부족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는데 이후에 이것을 문제삼아 어음할인료를 청구해 왔는데 이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답변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는 가정하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을 교부할 경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교부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어음교부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질문 발주자가 당사(원사업자)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날은 매월 28일이고,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날은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1회 기성금을 받기 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약정한 날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제1항).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이후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음(하도급법 제13조제4항).

질문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빌주자가 전문건설업체인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법률위반의 문제가 있는지?

하도급법이 사법 전반에 대한 특별법은 아님. 이 사례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임.

질문

4개사가 공동으로 빌주자로부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그 중 50%의 지분율을 가진 1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나머지 3개사는 각자 지분만큼의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아니면 부도난 1개회사의 채무까지를 책임져야 하는지?

하도급법상 공동책임을 질만한 근거는 없음. 하도급법이 사법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일반시법과 충돌하는 경우만 특별법으로서 우선 될 뿐이므로 이 사례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부분이 아님. 따라서 일반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함.

제시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a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 바로잡습니다.

월간 「공정경쟁」 제67호(2001. 3) FOCUS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출범(34면)」 중 “이인호 롯데백화점 사장”을 “이인원 사장”으로, “이인원 신한은행장”을 “이인호 은행장”으로 고칩니다.